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3707-8235/6 전송3707-8249
 리부서:주택재개발과(중구 서소문동 서소문 별관2층)담당:정현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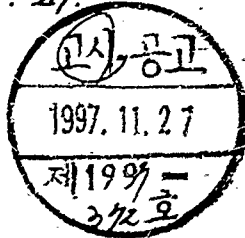
문서번호 주재 58531 - 2870

시행일자 1997. 11. 20.

(경유) (제 1 안)

수신 : 내부결재

참조



취급		시	장
보존			
주택국장			
주택재개발과장	전결		
재개발 2계장			
기안	정현배		
			협조

제목 : 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(일부추가)

1.은평 주택 58533 - 2798('97.11.11)호와 관련입니다.

2.건설부고시 제1993-56호('93.3.5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20호('94.1.29)호로 지구변경지정결정 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 160호('94.5.12)로 개선계획수립 고시된 구파발 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지구변경 지정 진달이 있어 내공검토향바, 도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로개설에 따른 지구변경 (경계 및 면적)요인이 발생하여 지구변경 요청한 내용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(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) 같은법시행령 제3조4항 및 제12조(권한의 위임)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지구변경(일부추가)하고,같은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따라 이를 고시코자 하오니 재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구지정 변경 내역

지구명	위 치	면 적 (m ²)		비 고
		기 정	변 경	
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	은평구 구파발동 95번지일대	5,277	5,738	지구추가 (증 461m ²)

따로붙임 : 1.고시안 1부.

2.지구변경 도면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: 총무처장관

제목 : 관보게재의뢰

1.아래와 같이 관보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게재구분 : 고시

나. 게재건명 : 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다. 법적근거 :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
행령 제3조제2항·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

따로붙임 : 1. 고시문 사본 2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3 안)

수신 : 건설교통부장관

참조 : 주택관리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보고

1.우리시 은평구 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및 고시도면과
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 및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따로붙임 : 1.고시문 1부

2.고시도면 사본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(제 4 안)

수신 : 은평구청장

참조 : 주택과장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 통보

1.주택 58533 - 2798('97.11.11)호와 관련입니다.

은평구청장

2.위호와 관련, 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및 고시도면과
같이 지구변경지정결정 및 고시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관련도서 사본을 구청,동사무에 비치

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하고 , 아울러 개선계획변경수립 등 업무추진시 도시계획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0조와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을 준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시기바랍니다.

따로붙임:1.고시문1부.

2.고시도면사본1부.끝.

서울특별시

(제 5 안)

수신 : 수신처참조

제목 :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결정 통보

1.우리시 은평구 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및 고시도면과 같이 지구변경지정결정 및 고시하였기 알려드립니다.

따로붙임 ; 1.고시문 1부.

2.고시도면 사본 1부. 끝.

주택개량과장

수신처 : 도시계획과장, 시설계획과장, 도로계획과장.

이인철

고 시(안)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 - 372 호

고시번호	1997.11.27	제 372 호
담당자	법제실사기경	법무담당관
	김민	이

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

1. 건설부고시 제1993 - 56호('93. 3. 5)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제1994 - 20호('94. 1. 29)로 지구변경지정결정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 -160호('94. 5. 17)로 개선계획 수립고시된 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제3조와 같은법시행령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변경지정결정하고, 같은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과와 온평구청 주택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1997년 11월 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주거환경개선지구변경지정조서

지구명	위치	면적 (㎡)		비고
		기정	변경	
구파발제1주거환경개선지구	온평구 구파발동 95번지입대	5,277	5,738	지구추가지정 (증 461㎡)

온평구청장